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경기도지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경기도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당기말 총자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63,101호

공인회계사 강희진 (인)



2026년 3월 27일